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(송재봉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73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5.

발 의 자 : 송재봉 · 조계원 · 전종덕
강득구 · 민병덕 · 문정복
이수진 · 김문수 · 김우영
강준현 · 남인순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05년 산불로 인한 양양 낙산사 전소, 2008년 화재로 인한 숭례문 소실 이후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, 산불 등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표 수종인 소나무림은 산불에 취약하고, 사찰 등 문화유산 주변의 소나무림이 화염 전파로 인한 산불 확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소나무림을 대신하여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불에 강한 수종으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, 내화수림대와 문화유산 사이에 일정한 거리의 안전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(안 법률 제20751

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의2 신설).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5조의2(내화수림대 조성) ① 산림청장은 산불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 안에 소재한 국가지정문화유산(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주변에 참나무류 등 불에 강한 수종으로 내화수림대(耐火樹林帶)를 조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내화수림대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이에 일정 거리 이상 안전공간을 두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내화수림대의 조성기준, 안전공간의 기준, 그 밖에 내화수림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<u><신 설></u>	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<u>제55조의2(내화수림대 조성) ① 산</u> <u>림청장은 산불로부터 문화유산을</u> <u>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</u> <u>령으로 정하는 대형 산불 위험이</u> <u>높은 산림 안에 소재한 국가지정</u> <u>문화유산(「문화유산의 보존 및</u> <u>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항</u> <u>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</u> <u>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주변에</u> <u>참나무류 등 불에 강한 수종으로</u> <u>내화수림대(耐火樹林帶)를 조성</u> <u>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불확산</u> <u>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내화수</u> <u>림대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이에</u> <u>일정 거리 이상 안전공간을 두어</u> <u>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내화수림대의</u> <u>조성기준, 안전공간의 기준, 그</u> <u>밖에 내화수림대 조성에 필요한</u> <u>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</u> <u>한다.</u>